

그린뉴딜과 기후금융 정책보고서

2020. 12. 10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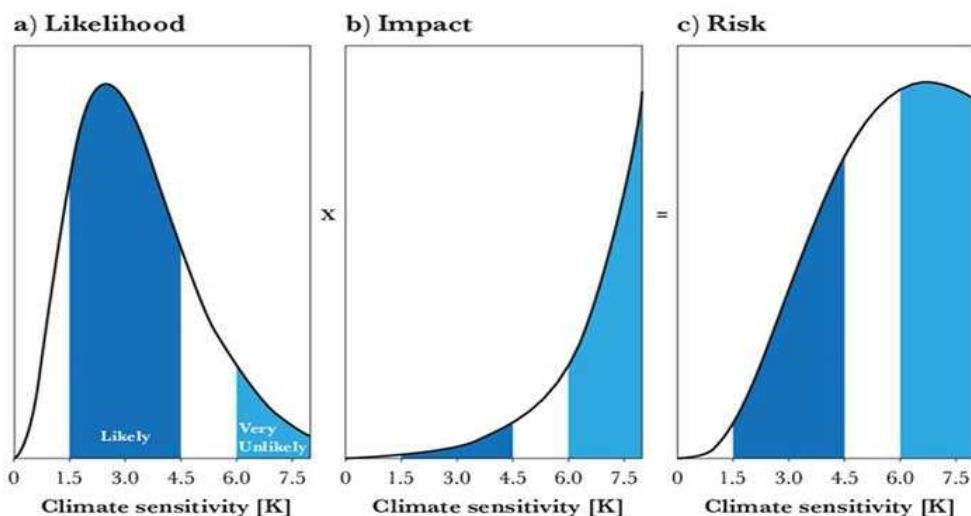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PART 1. 기후금융¹⁾

1. 서론 : 기후위기 시대의 개막과 기후금융의 도전

1) 기후위기에 대한 개괄

- 기후위기의 상황은, 10년 이내로 1.5°C 이하로 낮출 노력이 없다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서면서 인류의 통제권을 벗어나 기후위기가 더 큰 기후위기를 낳는 양성피드백의 자동적인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됨
- 1.5°C 이후의 양성 피드백에 대해 윌리엄 노드 하우스(William Nordhaus) 등이 제시한 항목은 ①그린란드 등 거대한 빙상의 붕괴와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 ② 해양 순환의 거대한 변화와 탄소흡수량의 변화 (포화상태), ③ 빙하의 용융으로 인한 반사도[알베도] 변화 (흰색에서 검정색이 많아지면 흡수량 많아짐), ④ 영구동토층이 녹아 메탄가스 배출, ⑤ 가뭄으로 인한 브라질 열대림 고사, ⑥ 거대한 산불, 에어로졸 효과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 증폭 경향 등임



[그림 1] 기후관련 위기 도식, (a) 사건의 개연성(likelihood), (b) 영향력 산출, (c) 위험도. 확률 분포의 최대치에서는 더 낮은 개연적 사건들이 최고도의 위험도를 띤다. (Credit: RT Sutton/E Hawkins). <호주기후복원센터 2019년 보고서>

- 《호주기후복원센터》가 만든 2019년 정책보고서인 『실존적인 기후 관련 안보 위기

1) 기후금융 (PART 1) 연구책임 -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장)

- 시나리오적 접근』에서는 양성피드백이 벌어질 것을 확률 상에 반영한 위의 팟페일리스크(fat tail risk) 그래프를 도입하여 생태적 연결망의 시너지가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1.5°C까지 10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지금 준전시에 필적할 대규모 자원과 인력이 투하되는 비상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

구분	1.5°C	2°C	비고
고유 생태계 및 인간계	높은 위험	매우 높은 위험	
중위도 족열일 온도	3°C 상승	4°C 상승	
고위도 극한일 온도	4.5°C 상승	6°C 상승	
산호 소멸	70-90%	99%이상	
기후영향-반구 취약 인구	2°C 온난화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의 명 증가		
물부족 인구	2°C에서 최대 50% 증가		
그 외	평균 온도 상승(대부분의 지역), 극한 고온(거주지역 대부분), 호우 및 가뭄 증가(일부 지역)		
육상 생태계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 될 비율	곤충 6%, 식물 8%, 척추동물 4%	곤충 18%, 식물 16%, 척추동물 8%	2°C에서 두 배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면적	6.5%	13.0%	2°C에서 두 배
대규모 특이 현상	중간 위험	중간-높은 위험	
해수면 상승	0.26-0.77m	0.30-0.93m	약 10cm 차이, 인구 천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벗어남
북극 해빙 완전 소멸 빈도	100년에 한 번 (복원 가능)	10년에 한 번 (복원 어려움)	1.5°C 초과 시 남극 해빙 및 그린란드 빙상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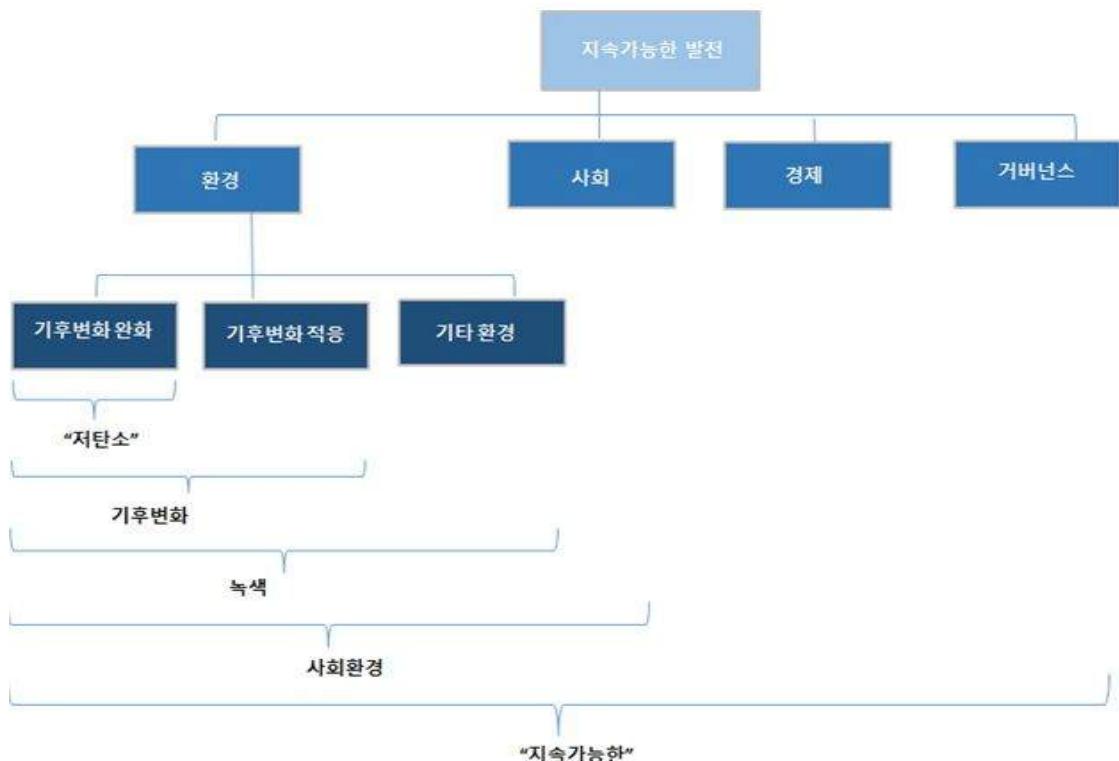
※ 이 외, 극한기상,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보건, 극물 수학량, 어획량, 경제성장 등에 관련된 위험(리스크) 모두 1.5°C 보다 2°C 온난화에서 높음(수치적으로는 제시되어있지 않음)

[표1] 지구온난화 1.5°C와 2.0°C 주요 영향비교 (출처: IPCC 1.5°C 특별보고서)

- 그린뉴딜, 기후금융, 탄소경제, 기본소득, 녹색기술, 에너지전환 등의 가속주의 전망과, 탈성장, 더불어 가난, 순환사회, 문명의 전환, 정동경제, 적정기술 등의 감속주의 전망의 길항작용이 대안으로 떠오름. 이러한 각 모델의 회복탄력성의 구축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 예상되며, 현재로서 하나의 모델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
- 가속주의는 2013년 알렉스 윌리엄스 & 닉 스르니체크: 선언-<가속주의적 정치를 위한 선언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을 통해서 가시화되었고 전환의 속도는 빠르게, 기술발전의 속도 역시도 빠르게 하는 전략이며, 최근 그린뉴딜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대규모 자원과 물량, 에너지, 부를 동원하여 수행하는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현대통화이론, 즉 MMT(Modern

Monetary Theory)를 통해서 부채신용이 아닌 국가신용을 기반으로 그린뉴딜, 기후금융,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통화주의 정책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감속주의는 제한, 감축, 유한성, 생태적 한계 등에 기반한 개념의 구도로, 모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성장주의의 미시적인 버전인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계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해지고 더 작아지기 위한 탈성장의 방향성으로 향하는 것. 자원을 순환시키거나,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반소비주의 노선도 여기에 해당하며, 특히 공동체 내에서 돌봄, 살림, 모심, 보살핌, 섬김 등의 스튜어드십을 통해서 정동(affect)의 순환을 추구하는 것도 특징적임.
- 기후위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의 석탄화력발전소(약 40%)의 감축과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약 82% 정도의 탄소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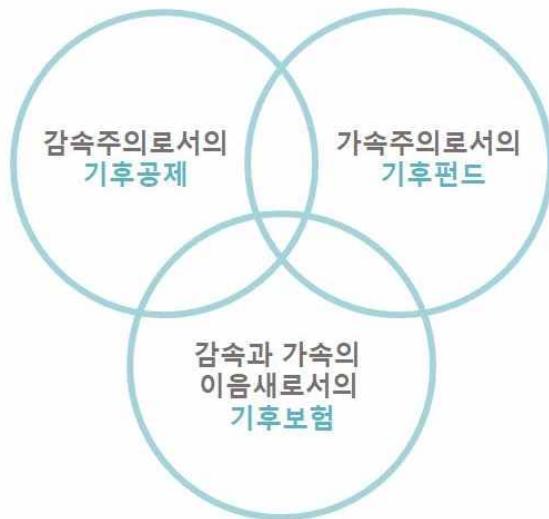


[그림2] 기후금융의 위치 (출처: UNEP (2016) UNEP Inquiry, Definitions and Concepts: Background Note

- 기후위기를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과 기업과 공공의 책임으로 보는 입장의 대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으로 보는 입장과 역사적 책임으로 보는 입장간의 미묘한 차이가 끊임없이 일관된 방향으로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 (교토체제의 논쟁)
- 기후위기의 대응과 적응에 있어서 기후금융은 중요한 특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탈석탄금융으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기후금융은 지속가능금융과 녹색금융의 하위범주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적 노력을 포괄하며, 먼저 기후금융의 컨셉과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금융은 이득은 사유화하지만 손실은 사회화하지 않나?”, “시장의 실패를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나?”, “미래투자전망을 상실한 자본에 대한 견인은 누가 하나?”,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한가?” 등의 문제제기로부터 탄생하였음. 기후금융은 전환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물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탄력성, 신축성, 가변성을 가질 수 있음.

- 사회책임투자포럼과 그린피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주관하여 만든 《2020 석탄금융 백서》의 발간 이후에 국민연금에 이어 석탄금융 2위를 차지한 삼성생명의 경우 앞으로 탈석탄투자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이제까지의 투자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는 상황임. 향후 석탄투자금융은 대부분 좌초자산이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금융이 투자할 것인가의 부분은 폭탄돌리기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
- 전략적으로 생명보험 부문을 기후보험 부문으로 전환하는 바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구조의 정립이나 구체적인 사업포트폴리오, 실질적인 정책제안은 부재한 상황이었음.
- 본 정책보고서는 기후금융의 세 가지 양상으로서의 기후펀드, 기후보험, 기후공제에 대해서 주로 다룰 예정이지만, 생명보험의 기후보험으로의 전환의 가능성과 정책연구에 방점을 찍을 예정.



2) 기후금융의 기동전과 진지전 : 빠른 전환가능성과 스튜어드십으로서의 ESG

[그림3] 기후금융의 기본구도

- 금융은 실물자산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실물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투자금 회수나 주식을 팔아버리는 행위양상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금융의 빠른 전환 가능성은 장점이지만, 기동전의 측면에서 금융을 다루는 것이 단타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주식투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주주참여와 주주의 감시와 견제에 대한 회피의 양상이 될 수도 있음.

○ 그런 점에서 기후금융은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두 가지 양상의 행동양식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이는 석탄금융의 경우의 향후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빠른 전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기업이 석탄금융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를 통해서 ESG[Ecology, Society, Governance]에 따라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함.

○ 주주들이 기업에 대한 책임성 있는 투자를 요구하는 진지전 양상은 기업의 건전도나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환경파괴나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기업적인 영리활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함.

○ 그런 점에서 기업은 탈석탄금융투자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책임성이 바로 기업의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주주들의 여러 가지 행동양식이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임

3) 기후금융 기금마련의 두 가지 전략 : 재정정책에서의 기후국채와 통화주의 정책에서의 MMT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던 200조 규모의 녹색채권에 대한 제안이 지금 시기로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이는 에너지전환과 녹색전환, 정의로운 전환의 시기가 향후에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식견으로 판단됨

○ 이제까지의 에너지전환에 드는 비용은 기술개발 등에 의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원가격의 상승에 따라 에너지전환에 드는 비용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 예상됨.

○ 그런 점에서 에너지전환에 드는 최적의 조건은 현재의 시점이며, 이에 드는 비용은 대대적인 기후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으로서의 대규모 자원이 투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후국채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같은 통화주의 정책도 있을 수 있음.

○ MMT와 같은 통화주의 정책은, 과거에 양적 완화와 같이 기업에게 돈을 찍어주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만 이제는 그린뉴딜이나 기후금융, 기본소득과 같은 거대계획을 성립시킬 수 있는 대규모자원 동원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음.

○ 자본의 ‘의미화=가치화=상품화’의 구도와 달리, 화폐는 ‘지도화=다의미화=다가치화’를 그리며 유동적인 흐름의 구도로 나타나며, 이러한 화폐의 지도화의 영역을 의미화로서의 자본이 포획해 왔던 것이 바로 부채신용과 이자와 관련된 금융자본주의의 기본구도였다면, 화폐의 지도화 영역을 n분절의 영역으로 개방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MMT(Modern Monetary Theory)이론에 기반한 통화주의 사상임. 이는 미국 민주당

에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OC, 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이나 베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등이 주장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경제이론이며, MMT를 통해서 기본소득, 그린 뉴딜, 기후금융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사실상 화폐의 지도제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음.



[그림 4] 그린뉴딜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오카시오 의원 (그림출처: Saul Loeb/AFP—Getty Images)

- 언제가 에너지전환과 녹색전환의 결정적인 순간인가에 대한 판단이 늦추어질수록 향후 그 비용은 산더미 같이 늘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최적의 시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결단의 순간이기도 함.
- 기후국채의 경우에는 독일의 마이너스 국채와 같은 부분이 참고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정할 때 마이너스국채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득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여 완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MMT는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작동양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통화주의를 통한 기후금융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음.

4) 탈석탄금융을 둘러싼 이중주 : 제도권 기후금융과 사회실천적 기후금융운동

- 탈석탄금융과 관련해서 KB금융지주회사와 같이 이미 제도권금융 내부에서도 일부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비제도권에 있는 기후금융운동에 따라 나머지 제도권 금융의 영역이 끊임없이 배치의 재배치를 통해서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야 할 부분이기도 함.

- 현재 제도권금융의 영역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사실상 지대이득을 바라는 부동산 영역에게 이니셔티브를 빼앗긴 상황으로, 이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전망을 상실하여 이자(interests)에서 부동산이득인 지대(rents)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국면임.
- 지대이득의 경우에는 단기투기성 자본의 영역으로 찰나의 이득만 중시할 뿐, 미래 세대와 관련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와 혁신성과 창조성의 영역을 완전히 상실한 자본의 양상을 의미함. 이는 기후위기에 직면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포기양상으로도 사회적으로 현현함.
- 제도권금융의 영역에서 금융파생상품으로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바는 주로 이득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어필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음.
- 기후금융운동으로서의 신용협동조합이나 공동체금고, 공제조합, 지역화폐, 클라우드펀딩 등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금융의 제도권 진출이 원활해졌을 때, 기후금융 역시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업형태로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에게 각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
- 결국 기후금융운동의 제 2라운드는 제도권금융과 어떻게 하면 교직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금융, 녹색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를 제도화할 것인가의 부분이 될 것이 예상됨.
- 제도권금융의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결국 지대차익과 같은 부동산투기에 빼앗겼던 이니셔티브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이득의 2중대 역할밖에 머물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혁신의 방법으로 기후금융운동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내부화하여 제도로 인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비제도권의 기후금융운동은 관계망을 통한 제도생산의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자여야 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민감성이나 유연성, 탄력성을 가진 작고 강한 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임.

5) 기후금융의 두 가지 작동양상 : 자본화(=의미화)전략과 화폐화(=지도화)전략

- 기후금융이 자본화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생산과 자동적인 확산의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제도권금융의 시각에서는 당연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화 전략의 부분은 의미와 가치의 확산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수익여부와 관련될 때 제한성과 한계를 갖는 측면이 있음.
- 국제 기후금융이 제 3세계와 맺는 관계의 측면이 사실상 자본화에 따른 한계의 측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점에서 제 3세계와 교섭할 때 기후금융이 자본의 성격으로 교섭하기보다 화폐의 성격 즉 기후공제나 사회적 금융, 지역화폐 등 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섭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기후금융은 자본화로서의 의미화 양식과 화폐화로서의 지도화 양식 둘 다의 측면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으로서의 금융이 돈이 돈을 낳는 자동적 과정에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때 갖는 한계를 화폐화 전략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점에서 기후금융의 측면에서 가장 지도화를 이루는 화폐의 영역에 근접되어 있는 클라우드펀딩이나 사회적 금융, 대안화폐, 기후공제, 신용협동조합 등의 관계망의 판과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권금융에서 보여준 파생금융상품으로서의 녹색금융처럼 가능성의 판이 축소되어 버린 자본화전략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

6) 기후금융의 세 가지 축 : 감속주의로서의 기후공제, 가속주의로서의 기후펀드, 이 두 가지의 중간 형태로서의 기후보험

○ 기후공제는 관계망이 갖고 있는 느림과 여백에 따라 감속하지만 화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지도화를 이루며, 이는 감속주의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기후펀드는 자본화된 성격으로 인해 의미와 가치를 빠르게 확산하고 자동화된 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기존 제도권금융에서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속주의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후공제의 감속주의와 기후펀드의 가속주의 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도화하는 화폐 중심이냐, 의미화하는 자본 중심이냐 하는 작동양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후공제의 지도화하는 화폐의 방법론과 기후펀드의 의미화하는 자본의 방법론 둘 다가 교섭함으로써 서로에게 상호침투하는 방식으로 서로 보완적인 영역에서 제도와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그런 점에서 기후공제의 지도화하는 화폐의 성격과 기후펀드의 의미화하는 자본의 성격 둘 다를 갖고 있는 기후보험의 위상이 부각되며, 기후보험의 반복되는 일상과의 접촉의 가능성은 기후공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한 자본화를 통해 재생산되는 성격은 기후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기후금융의 논의를 제도(=관계망)의 논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양상, 감속주의로서의 기후공제, 가속주의로서의 기후펀드, 감속과 가속의 병행과 이음새로서

의 기후보험의 세 가지 축 모두를 필요로 하며, 이는 기후금융이 일상적인 생활세계에 내재화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과도 공명함.

○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공제의 세 가지 축을 정교하게 만들으로써 기후금융의 생활화와 일상화에 대한 전략지도제작을 수행해 볼까 함.

2. 첫 번째 축 : 기후공제의 가능성과 도전

1) 내발적 발전 전략에서의 화폐의 지도화

○ 1976년 일본의 사회학자 츠루미 가즈코(鶴見和子)는 근대화론이 갖고 있는 성장주의, 개발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지역순환경제 모델인 내발적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는 공동체 자체에서의 자원-부-에너지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내부자거래 방식으로 승수효과를 갖게 만드는 전략이었음.

○ 내발적 발전에서의 중요한 지점은 각 공동체의 특이점을 연결하는 내부자거래양식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과 화폐를 순환시켜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후공제의 형태는 내발적 발전 전략과 공명하면서, 화폐의 지도화양상을 함입(陷入), 재진입, 순환, 반복, 중복의 양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작동양상을 보이며, 이는 화폐의 국지적인 것으로 머물게 하면서도 화폐가 갖는 지도화의 작동양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후공제는 느림과 여백, 순환의 공동체경제와 함께 작동한다는 점에서 감속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이 더디거나 지체된 형태라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화폐의 지도화의 흐름을 만들고 순환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공동체의 활력과 생명에너지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작동방식을 갖고 있다.

○ 기후공제의 상호부조형 기금조성은 사고나 불이익에 대한 자조적인 대응과 연대망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방법론 중 하나라고 할 있으며, 기후공제 자체가 계절별, 사안별, 상황별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기후적응에 대한 대처법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후공제회는 내부에 결사체적 성격과 연대체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다가올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전환에 드는 기금과 펀드 조성에 있어서 자원을 모으고 배분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제회의 기본적인 작동과 조직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부조의 정신과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 회원이 출자금을 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형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협공제, 신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외 (일반공제) - 학교안전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외 대부분 (조합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란우산공제 외 (정책성 공제) ● 상호부조형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군인, 소방, 교정 공제회 (특별법) - 담배인삼공제, 세우회, 철도공제 (민법) - 공제회 회원에 특화된 독자적 상품설계필요
운영	<p>[공제회 3대 업무 : 경영관리, 공제금지급, 회원모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 대상 공제상품의 판매(공제회원 확대) 방안 2) 공제회비 수납 및 공제금 지급, 결산업무 3) 손해의 사정 및 공제금 결정 프로세스 4) 공제기금의 운영 5) 공제상품 및 공제회 기금운영 외부위탁 업무 6) 공제회 위험의 분산 및 재공제 7) 시스템 구축업무 <p>[세부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운영: 회원데이터입력, 계약관리, 공제료 청구 및 입금관리, 공제증권 등 서식출력, 콜센터운영, 공제사무처리업무전반 - 보상관련: 공제금 청구서 접수, 기타 - 기타업무: 상품계리업무, 신상품개발

[표2] 설립위탁 또는 자문: 위맥 공제보험연구소 <http://wemacc.com/ab-1722> 자료참고

2) 십시일반과 모아서 나누기 방식의 화폐의 지도화를 통한 판 깔기

- 기후공제의 협동과 나눔, 상호부조의 구도는 기존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에 이러한 기후공제의 기능을 장착하여 작동시키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이는 기후공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존 연대체나 결사체 등에서 손쉽게 그 기능적인 사안을 적용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기후공제의 모아서 나누기라는 방식의 화폐의 지도화 양식은 기후공제 자체를 무

리해서 자본화하여 유지에 치중하기보다는, 수입과 지출이 제로로 딱 맞아떨어지게 하고 그 나눔과 연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기후위기에 맞는 실천양상을 하게끔 조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후공제회의 기능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개선은 결국 사회 각 부문의 조직과 연대체 등이 손쉽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방법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도록 활로를 개척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 기후공제회는 계나 두레 등의 상호부조모임의 특징을 온전히 가짐으로써 기후위기 문제를 개인의 실존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망연자실 기후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면서도 함께 이러한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색을 수행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협동의 장의 판을 깐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임.
- 기후공제회의 성격을 갖는 조직들로 손쉽게 전환하고 기능적인 영역을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된다면, 각급에 있는 연대체나 결사체 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모아서 나누는 기본적인 상호부조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

3) 부조와 계가 갖는 사회적 경제의 모태사상과 기후공제의 씨앗

- 기후공제회에 대한 가입 등을 통해서 탄소빈곤층에 대한 냉난방기 보급 등에 활용 할 여지가 큼. 일본의 경우처럼 공공에서 냉난방기를 직접적으로 보급해버리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후공제회를 설립하여 대응하는 경우에는 탄소빈곤층과 저소득층이 기후공제회에 가입함으로써 상호부조와 협동, 연대의 판 위에서 냉난방기를 보급해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자조적인 모임의 성격을 갖는 기후공제회의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 등에 대한 자율적인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 다시 말해 일용직 노동자,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기후공제회의 조직화나 기능장착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이 처한 기후위기 상황에 맞는 기후공제회의 금융상품 등을 작동시키고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에 대한 모색에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다양한 기후공제회의 금융상품으로는, 탄소빈곤층에게 주는 월요일 채식기후공제 조합 기금, 학생들에게 주는 화요일 자전거사용과 관련된 기금, 가정주부에게 주는 수요일 물발자국 낮추기 기금, 농민에게 주는 목요일 나무 심기 기금 등등의 상품이 있

을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경제 부문이 갖고 있는 상호부조와 계(契)의 성격이 기후공제회와 가장 공명하는 부분이 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기후공제회의 판을 깔 필요성이 대두됨.
- 사회적 경제의 섹터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후공제회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협동이 이루 진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하나의 경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기후공제회는 대부분의 자원과 화폐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으로서의 탄소복지 등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체경제, 사회적 경제의 기본 판을 다시 짜는 역할을 할 것임.
- 공공영역에서의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원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조성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4) 기후공제, 시장에서의 기후수당과 공공에서의 기후국채 등과의 삼월 구도

- 기업에서 주는 기후수당에 대한 부분이 공론화된다면, 이를 의무가입 형태로 기후공제회로 기후수당에 대한 책정금액을 돌려서 공제회의 금융상품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특히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기후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기후수당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공제회에서의 다양한 기후적응 프로그램 등이 작동할 여지를 갖게 됨.
- 기후공제는 공공에서의 기후국채의 발행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기후국채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과 구도를 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동시에 기후공제는 기후국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순환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임.
- 기후국채 발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육류세, 기후세, 환경세 등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기금 조성을 통해서 기후공제에 대한 지원방안의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를 통해서 기후공제회에서의 다양한 사업과 금융상품이 각계의 시민들과 주민들의 삶의 양식 즉 라이프스타일을 심원하게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기후공제회는 각 구에 기후공제센터를 두고, 각급 단체와 조합 등에 그 기능의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거대 기후공제회를 만들으로써 행정과 실무를 비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조직된다면 효율적인 작동방식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됨.

3. 두 번째 축 : 기후보험의 가능성과 도전

1) 기후보험과 미래의 문제

○ 기후보험의 문제는 미래보장성이라는 핵심 개념에 따라 설계되고 모델링되는데, 자본조차도 미래투자전망을 잃어버리고 단기투기성 자본으로 전락하여 부동산가치나 플랫폼에서의 지대차익의 획득에 전념하며 찰나라는 시간밖에 갖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실상 미래를 설명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시야 들어오는 것은 기후위기가 “근미래인가? 원미래인가?”라는 관점임

- ① 근미래 : 바로 앞에 닥칠 문제이며 지금-당장 무언가 해야 한다는 설정
- ② 원미래 : 조금 여유를 부려도 큰 영향이 오지 않는 문제라는 설정

○ 사실상 초점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2019년 발표된 호주보고서와 IPPC보고서 등은 기후변화가 10년을 분기점으로 벌어질 근미래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시함. 그런 상황에서 근미래적인 상황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즉각 미래적 시간을 회수해 버리고 포기해버리면서 단기투기성 자본처럼 찰나에만 탐닉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남. 기후보험의 겨냥하는 것은 “보장된 미래인가? 미지의 미래인가?”라는 점임.

- ③ 보장된 미래 (선형성) : 대칭적이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미래 - 의미화
- ④ 미지의 미래 (사건성) : 비대칭적이고 불안정하며 돌발적으로 다가오는 미래 - 지도화

○ 보통 보장된 미래의 영역을 따라 인과론적이고 선형적이며 대칭적으로 미래의 누적적인 다가옴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미지의 미래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돌발적이고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인 형태로 찾아오는 영역이 그것임. 이는 기상재해, 재난, 폭염 등과 같은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며, 결국 보장된 미래 역시도 미지의 미래를 완

벽하게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남

○ 그런 점에서 기후보험에서 조성된 기후펀드를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지의 미래에 대한 상쇄적이고 보완적인 효과를 겨냥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의 미래관은 보통 보다 나은 미래라는 진보적인 세계관을 겨냥하고 있는 데 반해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현재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의 영역은 이와 달리 역행적임.

⑤ 보다 나은 미래(진보성, 성장주의) :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⑥ 미래에서 현재로(역행성, 지속가능성) : 내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는 대비의 관점

○ 자본주의적 진보의 관점에서는 무의식의 행렬 즉 무심결에 흐름에 따라가도 나은 미래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노력과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미래였는 데 반해, 지속가능성의 입장에서는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할 미래라는 관점이 등장하여 무심결에 살아가는 삶을 미세한 차이의 순간으로 미분화해냄.

○ 기후보험에서는 이러한 미분화된 미래의 시간을 차근차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국 무심결의 미래가 아닌 정확한 로드맵과 타임테이블, 그 시간의 수평선 위의 자신의 위치 등을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그렇다면 미래의 가능성의 영역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에 고려해 본다면, 미래투자가능성을 포기하고 단기투기성 자본이 보여주는 찰나의 일회용품과도 같은 삶의 직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야 할까?

⑦ 오래된 미래 (과거 속의 미래) : 가장 과거의 것에서 미래적 소재를 찾음

⑧ 미래진행형의 미래 (미래 속의 미래) : 미래에서 미래로 나가는 가속주의 전망

⑨ 가능성의 미래 (현재 속의 미래) : 현재 속에서 선택지로서의 경우의 수 설립

○ 오래된 미래로서의 자전거, 지렁이, 텃밭, 재래식 화장실 등에서 미래적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으며, 더불어 가장 첨단기술의 혁신 속에서 색다른 미래로의 가속주의 전망을 찾을 수도 있음. 더 나아가 현재의 사랑, 욕망, 돌봄, 정동의 특이점을 하나하나를 설립함으로써 미래적 가능성을 구축할 수도 있음, 기후보험과 관련된 미래보장성에 대해서 윤곽과 스케치를 해보았으며, 기후보험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은 이미 미래진행형으로서의 미래를 의미함.

2)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관점에서의 기후소송

- 기후보험은 기후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기상재해나 폭우, 폭염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 내부 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나서야 할 것임.
- 석탄화력발전소나 탄소과다배출 기업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기후위기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이며, 구체적으로 그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묻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기상재해나 다양한 사건사고에서의 천문학적인 기후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법적인 조치가 없이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며, 그런 점에서 기후보험은 거대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보험료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그림5] 2018년 10월 3일, IPCC[UN]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48차 총회가 있던 인천 송도컨벤션회의장 앞에 모여든 청소년들 (그림출처: 청소년기후소송지원단제공, 뉴시스)

배출량과 이에 따른 책임부분에 대한 산정을 정확히 하고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 책임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는 회계적이고 정량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 기후보험은 기후공제와 같이 십시일반, 상호부조의 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지평이 있지만, 기후보험을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은 사실은 기후소송과 같은 구체적인 법제도의 상황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이 기후공제와는 차이점을 갖는

○ 청소년 기후소송 등이 앞서 2014년부터 있어 왔음. 이는 미래세대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피해를 긴 소송이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기후보험에서의 기후소송은 구체적인 인명과 자원의 손실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기후보험회사는 구체적인 탄소

부분임.

- 기후보험의 변호인단은 거대 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보험료가 지불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보험의 대부분의 자원을 투하하여 대규모 소송인단과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필요가 있음.
- 기후보험은 미래세대의 청소년 기후소송처럼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라는 추상수위가 높은 부분의 소송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작업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법률에 대한 표괄적인 적용을 필요로 함.
- 소송인단의 입증책임의 부분에 있어서의 과학자 등의 지원등도 요구되는 상황으로, 구체적인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안과도 함께 연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재난보험의 재구성을 위하여

- 재난보험에 관련하여 농산물 일부(9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재난의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기후보험의 역할은 재난보험으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는데, 이는 개인보험의 형태보다는 읍, 면, 동의 지자체 등과의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야 함.
- 재난보험의 향후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모델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인책임의 형태로만 남게 됨. 이에 따라 개인책임의 여지를 더욱 더 중요시하면 기후보험의 판이 구체화됨. 기후보험은 개인들이 가입하는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후공제와 같은 단체나 연대체, 결사체의 성격과는 차이를 가질 수 있음
- 향후 기상재난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방법에 대해서는 무언의 카르텔과 같은 침묵이 유지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 예측과 미래설계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
- 그런 점에서 보장성이라는 차원에서의 기후보험의 기본 구도보다는 지속가능성이 라는 차원에서의 기후보험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
- 보장성으로서의 미래설계와 예측은 수익성으로 함몰되어 사실상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델이지만, 수익여부가 아닌 탈탄소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생활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 사실상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보험 일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보험 자체의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것이 기후보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누군가 선뜻 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함.
- 그런 점에서 기후보험은 제 1라운드는 재난보험 형태의 개인가입형 보험이라면, 제 2라운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미래설계에 기반한 지자체나 기업 가입형 보험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들을 서로 연결하며 지속가능한 생활설계의 영역으로 다가가는 기후보험일 것임.
- 성장주의에 기반한 보험으로부터 보험회사들이 벗어날 때라야 비로소 기후보험의 지속가능성 생활설계의 가능성의 지평이 열릴 것임



[그림6] 생명보험의 석탄금융 비중, <석탄금융백서> 17p

4) 생명보험의 이야기구조와 기후보험의 이야기구조

- 보장성 중심의 생명보험의 이야기구조는 사실상 낡은 것이 되어 있으며, 이는 삼

성생명이 국내 2위로 석탄금융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그러한 석탄금융으로서의 생명보험 회사의 자금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반생명적인 기업운영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음. 지금에 와서도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지만, 이전까지의 석탄금융부문에 대한 답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아직도 성장주의적인 보장성 신화에 머물고 있음

○ 사실상 생명보험의 생명에 대한 관점은 지극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장성 신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남.

○ 그러나 다가올 거대한 기후위기 시대에 보장성이라는 생명보험의 명제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추상적인 담론에 불과함. 이에 따라 생명보험 자체가 기후보험으로 이행하고, 보장성이 지속가능성의 이야기구조로 이행할 필요성이 대두됨.

○ 생명보험의 가입 시 하나의 옵션이나 하나의 매뉴얼, 하나의 기능으로 기후보험의 항목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서 점차 기능 연관을 확장하는 형태로 점진적인 기후보험으로의 이행을 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급격한 이행을 추구한다면 생명보험과 별도로 기후보험의 금융상품을 만들도록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설계와 관련된 이야기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담론의 이야기구조로의 재편을 요구함.

○ 기후보험의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제도권 금융과 관계 당국, 기후금융운동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민관협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라운드테이블을 까는 것은 기후금융운동가들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기후보험에 대한 마중물이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기후금융운동가들이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5) 기후보험에서의 보장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담론은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환경운동가의 제안에 따라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 현재의 생산과 소비활동이라는 점으로 적시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찰나를 사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보장성 여부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의미함.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아젠다로 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대계획, 거대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기금 운영이 단기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어 보장성 여부를 층족한다는 단기적인 사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것이 석탄금융이나 환경파괴기업에 대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림7] 2020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 기후보험은 이러한 연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으로써 연기금 운영에서의 대부분이 기후금융으로 작동하게 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준비동작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모델링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생활설계의 부분과 기금운영의 부분을 계속 재조정하면서 개인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는 것을 특징으로 해야 함.
- 이를 통해 기후보험이 갖는 최초의 출발점은 자선이나 기부의 영역으로 어필해야겠지만, 이후에 과정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혁신과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기금을 민간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
- 기후보험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처인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기료 인상 부분을 두고 유상증자의 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나누어줄 부분을 기후보험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이를 통해서 전기료 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후보험 가입 및 주식의 부문으로의 이행은 소비자들에

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후보험이 기후공제의 화폐의 지도화부문과 기후펀드의 자본의 의미화부문을 연결하는 이음새의 역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기후금융 전반에 대한 디자인과 설계의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임

4. 세 번째 축 : 기후펀드의 가능성과 도전

1) 위기 시, 지역화폐 연계 기후펀드 운영

○ 한국정부는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의 의장국이며, 2019년 10월 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었던 <2019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당사국임. 그러나 기후금융에 대한 인식과 확산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는 기존 녹색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여겨져 왔던 기후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됨.

○ 기후펀드는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보수정부 시절에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서 추진되어 왔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품목 중 하나도 여겨져 왔음.

○ 기후펀드가 성장주의의 그림자가 깃든 금융자본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유가 바로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시장에 맥락 없이 나왔기 때문임. 오히려 지역화폐나 대안화폐 등 사회적 금융의 맥락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나와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남

○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지도화의 능력에 기반하여 기후펀드의 의미화와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배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점점 지역화폐와 실물화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펀드는 지역화폐의 운영과정에서 하나의 투자처로서의 옵션이 될 수 있음.

○ 이를 테면 서울지역에서의 재난지원금으로 나왔던 제로페이에 대해서 화폐의 지도화라는 방향성에서 재난 시의 대처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기후금융과 기후펀드에 한해서는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화폐의 지도화와 자본의 의미화의 길항작용을 추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 투자옵션을 기후펀드가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지도화하는 화폐에 머물러서 의미와 가치의 확산에는 더딜 수 있는 지역화폐의 제도권과 비제도권 영역에 대한 색다른 전략적 활로를 타진해 볼 수

있음.

- 이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온 지역화폐 등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전환됨으로써 사실상 경기부양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후펀드의 운용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가치, 윤리, 의미 등으로 향할 수 있음.
- 기후펀드의 운영에 대해서는 EU 등이 수행하고 있는 기후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투자방법 및 척도 개발, 기금운영방법 개발,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개발과 탄소발자국기반 금융경제의 재편 등이 사례일 수 있으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기후금융 특히 기후펀드의 조성에 있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로 페이 등을 이용한 투자옵션의 마련을 통해서 활로를 찾는 것이 필요함.
- 기후펀드를 여타의 금융파생상품의 일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금융프로그램이나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2) 사회적 금융과 기후펀드의 연결가능성

- 사회적 금융은 (1) 자본에 대한 경제적 이득 추구만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의 공동의 이득으로의 전환, 여기에는 그라민은행이나 소셜투자, 마이크로파이낸스, 임팩트 투자 등이 해당하며, (2) 사회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금융적 모색으로 대안화폐, 윤리은행, 크라우드펀딩 등이 해당하며, (2)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유럽은행 등의 금융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방점을 찍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함.
-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인 문제해결형의 금융 유형으로 자조적이고 자율적으로 빈곤이나 지역문제, 환경사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형태로 아래로부터 조직되어 왔음. 이러한 사회적 금융의 아래로부터의 금융 자조그룹의 형성과 발생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기후금융 역시도 이러한 사회적 금융의 다양한 생성과 발전과정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옵션 등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금융과 제도권 금융이 접합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자본의 사회화 국면과 사회의 자본화 국면의 최극단지점에서의 교직영역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금융이 갖고 있는 자발성, 창의성, 혁신성을 제도권 금융에 이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기후금융을 사회적 금융 형태로 조직하는 방향성과 제도권 기후금융을 사회적 금

용과 사회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성이 있을 텐데, 이 둘 다를 이용하여 제도와 관계망 둘 다를 공진화시킬 방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금융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척도개발과 환산과 회계담론은 SK 등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와 분리된 자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있는 바임.

○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발흥하고 있는 사회적 금융의 움직임은 사실상 사회적 가치평가지표로서의 성과지표에 걸려드는 표상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돌봄, 살림, 정동 등 의 성과지표에 걸려들지 않는 비표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금융이 사회적 금융과 교직할 경우에는 제도와 성과의 영역에 미치지 않는 관계망과 살림의 영역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화폐의 지도화 양식에 기반하여 할 것임.

○ 기후금융이 제도권 영역에서의 금융파생상품으로 맥락도 없고 배치도 없이 제시되는 것은 사실상 금융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망의 일부라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금융의 맥락과 배치의 판 위에서 색다른 자본의 의미화의 옵션이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때라야 기후펀드는 일상과 생활세계에 안착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기후펀드는 제도권에서의 상품적 성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영역의 판 위해서 작동하는 새로운 옵션이나 금융프로그램으로 배치되어야 함.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금융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영역과의 교섭과 공동의 노력과 협력 없이는 기후펀드가 삶의 영역에 자리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됨.

○ 특히 성장주의나 금융자본주의에 기반한 기후펀드는 사실상 발생과 생성 자체에서부터 모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작동과 시민과 주민들에게 어필하고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애초부터 없다고 할 수 있음.

○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 등은 관계망과 배치 없이는 무력하며, 특히 저성장 시대와 같이 자원에 따라 관계망이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온 현 시점에서, 제도와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자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기후펀드는 어떻게 하면 관계망으로서의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교섭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음.

3)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처로서의 기후펀드

-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지금처럼 전기 값이 싸고 남아도는 상황이 극복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웨덴처럼 유상증자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이를 위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펀드의 주식을 나누어주는 방법이 구사될 수 있음.
- 동시에 기후펀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이중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에서의 녹녹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생태배당의 주요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기후펀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기금투하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급부상함으로써 그 기금 운영에서 있어서도 탈석탄금고, 탈석탄금융 등을 선언한 각계 은행과 단체, 지자체 등의 주요한 금고나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후펀드는 탄소발자국 척도를 각종 상품에 대해서 측정함으로써, 저탄소 상품과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수행할 수도 있음.
- 특히 기업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등이 재생에너지 100%사용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와 금융정책 등에서 기후펀드의 역할은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설립에 대한 대행과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금융지원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석탄금융을 운영하면서 수익성 등을 따졌던 각급 기업, 보험회사, 생명보험, 투자운영사 등에 대해서 탈석탄금융으로의 전환 이후의 대안으로 기후펀드가 자리 잡음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영과 탄소빈곤층에 대한 기여등의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펀드운영주체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임.
- 특히 앞으로의 증세의 방향성 속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세나 탄소세, 육류세 등의 세수의 확보를 통해서 기후펀드의 공공의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후펀드, 저탄소 포트폴리오 투자 방안

- 기후펀드가 막대한 금액으로 조성된다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첫 번째 투자와 기금운용의 원리가 되겠지만, 다른 방향성으로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것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저탄소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탄소발자국 척도를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여 이를 평가의 척도로 삼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탄소감축에 힘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사회적 책임투자의 ESG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감시할 것인가의 방안도 갖고 있어야 함.

- 저탄소 포트폴리오에는 단연코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 등의 기후농부의 역할이 빠질 수 없으며, 이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식량난과 기후위기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펀드는 농업 중심의 전환사회에 대한 마중물이자 중요한 투자당사자가 될 수 있음.
- 특히 청년층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기업 등에서 제출한 저탄소 포트폴리오에 대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의 큰 틀의 방향성에서 주관하고 임팩트 투자의 자금 운영처가 될 수 있음.
- 녹색기술, 친환경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적인 가치투자가 되게끔 이를 주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기후펀드의 역할임

5) 기후펀드와 탄소경제(탄소중립, 탄소순환, 탄소세, 탄소시장)의 연계방안

- 탄소금융은 기후금융의 하위 카테고리이며, 기후금융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방안 까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탄소금융과 함께 항목을 이룸. 탄소금융의 갖가지 영역들은 대부분 기후금융의 일부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후펀드는 탄소경제의 투자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특히 탄소세와 같은 영역은 기름에 매겨졌던 유류세와 같이 SOC사업에 투하되는 자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기후펀드에 공공의 자금을 역할을 해야 할 것임. 형거리 경제학자 칼 폴라니가 적시했듯이, 시장의 상품을 사고파는 역할과 공공의 모아서 나누는 역할, 공동체의 선물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역할 등이 탄소순환, 탄소세, 탄소시장의 스펙트럼으로 배치될 수 있음.
- 탄소시장의 영역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구도가 제로섬 게임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해외의 시민사회가 탄소배출권을 사서 태우는 노력을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펀드가 매각하는 주체가 되는 것 등도 기획될 수 있음.
-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해외나 국내의 지역에 나무를 심음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구사되는데, 이에 대한 기금운영에 있어서 기후펀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탄소순환과 관련된 유기농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금융적 배치 속에서 농업에 투자가 되도록 만드는 방안에 있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기후펀드에서 투자하는 할당제를 운영하여 유기농업의 탄소순환의 방향성에 일조해야 함.

결론 : 위기에 강한 기후금융을 위한 방법론적 제언

- 기후금융은 금융의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과 배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와 공명하는 바가 큼. 사회적 금융과의 교직과 협력을 통해서 기후금융의 구체화가 이루어진다면 위기에 강한 기후금융의 조직화 모델이 구축되리라고 판단됨.
- 앞서 말했듯이 하나의 모델이 모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대응력과 회복탄력성(resilience)를 갖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 기후금융도 배치되어 있으며, 기후금융의 한계와 성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판을 짤 필요가 있음
- 기후금융의 다각적인 제도화와 법제화와 더불어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는 과정이 병행된다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하나의 방안으로서 라이프스타일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음
- 다가올 거대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정책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현실적인 판단이며, 이는 성장, 발전, 성과를 바라는 여타 제도권 금융보다 훨씬 더 구체성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됨.

Part II.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이행방안²⁾

1. 그린뉴딜 정부 정책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비교검토 (하단 표 참조)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110조 규모, 4대강 26조 포함)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73.4조 규모(국비 42.7조), 전체 한국형뉴딜 160조 중 46%)
 - 주요 특징: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성장을 처음 도입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증이나 투자, 제도검토 등에 많은 비중을 둔 반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이미 녹색성장을 경험하였던 정부로서, 산업과 생활SOC 등 실질적인 이행기관 중심의 '체감형 에너지 전환'에 비중을 높임.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는 이유는 정권 후반기에 도입된 나머지 제도검토와 안착 같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보다는 현재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실행가능한 전환에 집중되어 있음.
 - 제안: 제도와 과학에 의존한 지속가능한 전환 및 배출권거래제의 제도(룰) 점검필요. 앞으로 이행계획을 통해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공정한 전환,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길 기대함.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앞서 제시된 가속주의의 개념으로 그린뉴딜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아닌 “제도”로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함. 탈화석연료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일관된 시그널을 전 부처에서 동시에 보여줘야 함. 산자부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고,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등 전 부처의 사업에서 지속가능지수 혹은 탄소발자국 내지 기후위기 점검지표를 통해 정책과 개발사업의 BC분석처럼 의무화해야 함. 이러한 제도의 정착이 실제로 경제적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저평가되어 온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과 정책에 내재화 필요.

②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등 그린뉴딜에서 다루지 않는 제도 개선과 새로운 시도 (예, 도시간 배출권거래제) 검토 필요. 고에너지 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고탄소 산업생태계의 특성상 단순 기술개발 컨설팅으로 저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은 어려움. 그 중 철강산업³⁾은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호황 시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나 고탄소 생산방식을 유지할 경우 수출 장벽(supply

2) Part 2 연구책임: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3)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인증 배출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9)에 따르면 발전·에너지부문 다음 2위 온실가스배출원으로 연간1억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배출량의 약 15%).

chain 전체 탈탄소화 요구)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이미 1차 계획기간에 철강산업이 배출권의 주요 매도부문이었음을 감안하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비율⁴⁾을 낮추고 탄소국경세 등에 대비하여 탄소저감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현재 배출권의 매수업체가 발전사와 비철금속, 석유화학임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무상할당 요청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들의 경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원 교체로 배출량 감축이 시급함. EU의 경우, 민감 업종의 경우 100% 무상할당을 취하기도 하지만 발전업종의 경우 100% 경매할당하고⁵⁾ 일반업종의 경우에도 2013년 20%에서 2020년 70%, 27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⁶⁾.

[표 3] EU ETS 단계별 운영현황

	1기	2기	3기
기간	‘05~’07	‘08~’12	‘13~’20
업종	전력, 에너지 다소비산업	전력, 에너지 다소비산업, 항공	전력, 에너지 다소비 산업, 항공, 석유화학, 암모니아, 알루미늄
유상할당	실제 0.12% (법규상 5%이내)	실제 3.07% (법규상 10%이내)	발전100%, 산업20%, 항공15%
초과배출벌금	40유로/톤	100유로/톤	100유로/톤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자료출처: 한국은행 (삼정KPMG(2018) Issue Monitor 87호에서 재인용)

단, EU 국가들은 민간산업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로 인해 해외로 산업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수입)에 대해 탄소국경세로 관세를 강화할 계획임. 미국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럽과 같은 정책을 취할 것이므로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 기술혁신이 절실한 상황. 실제로 1, 2기(1990~2012년)에 걸쳐 EU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건설 부문에서 약 38%감축, 폐기물 31.5%, 산업공정 30.6%, 농업 24%, 에너지 16% 감축 달성하였음⁷⁾. 운송부문에서만 14% 증가하여 배출권 거래제가 작동하였음. 최근 배출권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배출권을 확보하여 이월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음.

4) 온실가스 배출권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산업부문의 감축 비율이 시대적 요구에 상당히 뒷쳐져 있음. 특히 철강의 경우 무역의존도에 따라 100% 무상할당으로 이루어짐. 법률적으로는 업종별 우수 기술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벤치마크(Bench-mark, BM)방식을 기준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거의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급진적인 배출권 할당량 감축은 어려운 현실임. (참고: 환경부 (2020.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5) EU에서 발전부문에 100% 경매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어서 압박이 가능.

6)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ICAP) (2018) Emission Trading Worldwide: ICAP Status Report 2018 (<http://icapcarbonaction.com/en/>)

7) 삼정KPMG(2018) Issue Monitor 87호 진화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기업의 탄소비용 대응방향.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 90%이상의 상황에서 탄소배출 감축 기술에 대한 효용성이 평가 절하될 수 있어 캘리포니아 방식의 적극적인 거래의 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지역이나 도시 단위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으며 배출권 시장간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타 지역의 제도와의 유사성 및 거래가능성에 관해 적극적인 연구 필요. 또한 규제나 제도의 변화가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테슬라의 경우 자동차와 배터리로 적자인 반면 탄소배출권 판매로 인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⁸⁾. 기업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탄소중립에 대한 의제 명확성, 정책의 일관성과 배출권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그림 9] EU 배출권 거래가격 추이 (2008~2020) (그림출처: EMBER Climate EUA Price (<https://ember-climate.org/data/carbon-price-viewer/>))

③ 국가적 예산투입과 별개로 지방정부와 기업의 참여 설득장치 부족.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예산규모(73.4조)는 국가투입 예산 외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안정성 문제로 인해 예산 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소극적인 참여에 그칠 수 있음. 이미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한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있지만, 여전히 국가 및 지방정부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

8) KBS뉴스, 2020. 7. 24 “테슬라 차 팔아서 돈 벤 것 아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01676>

한 상태임.⁹⁾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매칭예산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프로그램 참여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보상, 장기적인 책임이 주어져야 함. 태양광 설비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한전의 송배전망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황임.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의 권한이양이 있어야 마이크로그리드나 배출권거래제 등 창의적 시도들이 등장할 수 있음. 스마트 산단에서 RE100 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음.

스마트 산단, 생태 산단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에서 언급되었던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생태적 순환경체 체제 구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이번 그린뉴딜에서는 재제조업 등 물질재활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농축수산업 비중이 높은 농어산촌지역의 경우 가축 및 축산폐기물과 도시의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나 탄소 순환의 구체적인 이행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아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지방정부로서는 실행에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지방정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빼놓을 수 없음. 그린뉴딜에서 공정전환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에 의존성이 높은 경우 과감한 전환이 불가함. 과거 서천군에 생태산업단지와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들여오면서 장항산단 포기를 받아낸 것처럼 생태적 일자리와 서식지 및 하천 복원 사업, 4차 산업 관련 구체적인 일자리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업체들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역량 증진 프로그램,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 없이는 전환이 불가함.

④ 그린뉴딜에서 지원할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의 부재. 현재 국가에서는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이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강조점이 드러나지 않음.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도시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항건설이나 매립지의 도시개발, 발전소 건설 등 해안지역의 개발을 방지해두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철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린뉴딜에서 구체적으로 미래 전망이 없는 각종 해안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분명한 부정적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함.

[표 4]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비교

	MB 정부 녹색성장-그린뉴딜	문재인정부 그린뉴딜
녹색투자	(녹색투자 활성화) 녹색기술.프로젝트, 녹색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녹색인증제'와 '녹색기업 확인제'를	○ (녹색금융)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용자 1.9조원 및

9)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https://www.gihoo.or.kr/portal/kr/cnc/cnclntro.do>)

	<p>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된 기술.프로젝트의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에 있어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녹색 예금.채권을 통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하여 인증된 녹색기술 등에 투자 <p>* 조달된 자금의 60%이상을 인증된 녹색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만 혜택</p>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 조성
녹색산업 (친환경산업)	<p>(녹색 기술.산업 육성) 녹색 R&D 투자를 확대하고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CO₂ 저감 등 녹색 R&D 투자를 '09년 2.0조원에서 '10년 2.2조원까지 확대 ○ 해상풍력 시범단지 구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도 지원 ○ 혁신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소비형 생산공정을 확대하고 중소 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토대로 녹색전문기업 육성('10년 200개) ○ 그린홈 보급('10년 18만호), LED 보급 확대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기술 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청정 대기, ②생물 소재, ③수열 에너지, ④미래 폐자원, ⑤자원 순환 ○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 (~'24년),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23년)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부품을 회수-분해-재조립하여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는 산업
해외진출 지원	<p>(녹색산업 해외진출 촉진) 그린 ODA 확대, 해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ODA 비중(양자간 기준)을 '13년 20%, '20년 30%으로 확대 ○ 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탄소펀드」(약 1,000억원)를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CDM 사업을 지원하고, ADB가 조성중인 「미래탄소펀드」에 EDCF를 통해 투자(최대 2,000만불) 	<p>* 별도의 해외진출 지원항목은 없으나 미세먼지 대응 차원에서 국제협력 추진 중이므로 여기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24년),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22년) 등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LED 조명 등 신성장동력 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를 조기에 구축 ○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10.1월) 	
녹색산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 ○ 오히려 농어촌지역의 뿌리산단사업을 추진하였음. 	<p>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업)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R&D· 실증·사업화)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21년) * 도시재생지구 내 친환경·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지역 ○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10개소) ○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최소화 (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에너지 전환	<p>(에너지 저소비 구조 정착) 에너지 절약, 탄소 저감 기술개발, 국민생활의 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09년 6,400억원 → 10년 7,600억원) ○ 부문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p>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리모델링)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 ○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 이상 대규모 사업장(50여개)부터 적용하여 12년까지 2만 TOE 이상 사업장(400여개)까지 확대 적용 ○ 각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해 <u>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관리하고, 관공서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선</u> ○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 마련 ○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에 대한 추진 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10년 초부터 실시 <p>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890+α동(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α동) **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참여SOC 펀드 조성 등 통해 사업확대 추진 <p>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AMI* 보급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 전환(34개), 환경설비 구축(3개),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설치(5개) ○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 까지 총 2조원 투자) <p>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추진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도입, 농촌·산단 응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20만 가구) ○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	---

		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온 실 가 스 감축	<p>(온실가스 감축)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 분석하고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검토하여 감축량을 설정 ○ 부문별로 실효성있는 감축 이행 방안과 소요비용 조달방안을 마련하되, 시장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립 ○ 감축목표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 *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를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 회의)를 운영하는 등 경제부처 간 협의·조정체계 구축 ○ 감축 이행이 분배,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여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 (수소차)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 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 ○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2만대 <p>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 대상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스마트 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 ~'22년)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 ~'24년) 추진 ○ (먹는물 관리) 수질개선·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3,332km, ~'24년)
제도개선	(배출권 거래제 기반 구축)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제도개선 부분 미비

	<p>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 할당 방법(무상배분/경매), 할당 규모(업종별·업체별), 거래소 설립방안, 배출권 등록방안 등을 종합 검토 <p>(환경친화적 제도개편) 녹색성장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u>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완 ○ <u>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수 강화, 간소한 한식메뉴 개발·보급 등 추진</u> 	
해외자원개발 및 지방 정부 협력	<p>(해외자원 개발) 자원 정상외교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10.3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 분야에 시중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내 5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추가 5천억원 규모의 펀드는 '10.상반기 중 조성 ○ 정부·국책은행 등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금리우대 등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출입은행 자원개발금융</u> : (09년) 1.3조원 → (10년) 2.2조원 ○ 유망 석유개발 기업에 대한 M&A를 적극 추진하고, 유연탄·우라늄 등 전략광종의 생산광구 지분 확보 추진 	<p>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25개 지역, ~'22년) ○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 (생태계 복원)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갯벌 4.5㎢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협회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정보수집·공유를 위한 On/Off-Line 네트워크(정보시스템)를 구축 	
	<p>(기후변화 적응) 극지기후변화감시소(남극) 세계기상기구(WMO) 지정 ('10.12), 지역기후모델 구축('10.9)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 등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p>기후변화 적응 부분에 대한 뉴딜계획 제시되지 않음. (농어촌의 에너지전환 외에 경작물과 산사태, 홍수, 가뭄 등 재난에 대한 R&D와 인프라 개선 필요)</p>

2. 그린뉴딜 관련 법(안) (민주당, 정의당 법안)

-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몇 가지 안 중에서 민주당(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과 정의당(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민주당 법안과 정의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의 위계. 민주당은 기본법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반면, 정의당은 특별법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병행하며,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원활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법안. 지속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 법안 모두 가능함.
- 현재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다시 격상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민주당의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지속가능발전법>은 기본법으로 격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특히 그 간의 주요 논쟁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지속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중복적인 측면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 내용면에서는 민주당의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에서 제시한 체계가 이행가능성이 높아 보임. 특히 촘촘하게 제시된 이행체계 중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통해 재원마련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탈탄소사회 이행책임관’의 임명은 현재 진행되는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이행계획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에서 제시한 대통령 소속 국가 기후위기위원회는 9인 체제이지만 사무국을 두고 공무원 파견을 통해 공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의당의 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이나 현재 다수의 위원회들에서 나타나듯 거버넌스 수준에 머무를 수 있어서 집행력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시행령의 구체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대전환이 탄소중립 관련 법안을 제안한다면, 정의당의 그린뉴딜 특별법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촘촘한 안을 마련해야 하며, 민주당과 차별되는 지속가능발전법과의 조율 및 총체적 시각에서 기본법(안)과 체계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표 5> 그린뉴딜(탈탄소사회) 관련 법안 비교

	민주당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정의당 탈탄소사회 전환 특별법(안)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유럽의 그린딜, 미국의 탄소국경세, 중국의 탄소중립목표 선언 등 국가경쟁력 위협요소 증가 (국내)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 요구 정의로운 전환, 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정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실업,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하는 그린뉴딜 필요 국민의 삶의 질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 구축
목적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탈탄소 기술과 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 구현	탈탄소사회로의 전환과 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함께 해소하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 및 사회 구축
목표	2050 탄소중립(순배출제로)	그린뉴딜정책 추진 (탈탄소사회=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국가 / 지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시행 20년 계획기간의 ‘국가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과 ‘공공기관기후위기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에너지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탈탄소사회 국가전략”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탈탄소 사회국가전략에 조화를 이룬 지방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소속 국가기후위기 위원회(9인)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항 심의·의결 지자체 수준의 지방기후위기위원회(모법 역할) 중앙정부, 광역 및 시군구 탈탄소 사회 이행책임관 지정 (보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소속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25명 이내, 1/3민간위원) 그린뉴딜정책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정부는 ‘그린뉴딜특별지구’ 지정 가능(취약지역) 그린뉴딜특별위원장이 보고
정부 역할 /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총량 제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기관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행사항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부문에서 그린뉴딜정책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영향평가 - 재생에너지 산업 및 주민참여형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시행 - 녹색건축물, 탈탄소교통체계, 탄소 흡수원 등 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마련 - 탈탄소경제, 탈탄소 연구개발 등 산업지원 - 기후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사회국가전략 포함내용: 그린 뉴딜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조세, 금융에 관한 사항, 정의로운 전환전략,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에 관한 사항,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특이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폐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전략 추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병행)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09.12.10.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2010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 정책)
- 관계부처 합동, 2020.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9.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 김형주 외, 2017, 국내외 기후금융·산업의 현황, 주요사례 및 시사점, 녹색기술센터
- 노형식, 이순호, 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유철규, 2016, “한국금융의 진단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과제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돌베개
- 진익, 김윤희, 2016, 공공기후금융 정책 평가 (사업평가보고서) 국회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랜德尔 레이, 2017,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화폐의 비밀과 현대화폐이론, 흥기빈 역, 책담
- 임대웅, 2020.9.1. “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도입방안”, 제1회 지니포럼 그린뉴딜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후금융 발제자료
- 임동민, 2020.9.1. “그린스완 위험과 그린투자의 기회”, 제1회 지니포럼 발제자료
- 한상범 (2020.9.15.) “한국판 뉴딜과 사회책임투자의 활성화” (사회책임 투자채권 (ESG) 활성화 토론회 발제자료)
-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 2019, *Breakthrough*, 이승준, (사)모심과살림연구소·생태 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공동번역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회의원 양이원영, 그린피스, 2020, 2020 한국 석탄금융백서: 한국석탄금융12년 그 충돌의 기록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영국 녹색금융 전략보고서 (영국정부보고서 요약)
- Elliott, L., C.Hines, T. Juniper, J. Leggett, C. Lucas, R. Murphy, A. Pettifor, C. Secrett, and A. Simms., 2008, *A Green New Deal: Joined-up policies to solve the triple crunch of the credit crisis, climate change and high oil prices*. (The first report of the Green New Deal Group, UK)
- IPCC, 2018,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 Makers)
- Mastini, R., G. Kallis, J. Hickel, 2020. “A Green New Deal without growth?” *Ecological Economics* 179 (2021. Publishing)